

제41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4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5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7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4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2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7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05)
-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40)	3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53)	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5)	3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23)	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5)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79)	3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3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3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3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3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3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4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9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4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7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정감사 안건들을 처리하고 법안을 상정하며 디지털 포용과 인공지능 관련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심사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10시02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4항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5항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관계 법안의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기부·방통위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이용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본 법안들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생성형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고지 및 표시 의무만을 규정하는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및 사업자 책무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함께 딥페이크 문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실질적인 차별 규제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0시06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6항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디지털 포용과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신민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민수** 안녕하세요.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고령층 등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을 살펴보면 기기에 대한 접근보다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라든가 활용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사회적 소통과 경제활동의 필수재로 인식해서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장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리가 장관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EU가 EU 국민들의 어떠한 특정 국가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국의 어떠한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벗어나서 자국 국민들이 어떻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거나 삶의 균등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관련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함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 격차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결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을 정책 목표로 잡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것이 정보기술의 접근성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사회적 소통과 경제활동 등의 필수재로 인식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수립됐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경쟁력 증진이라든가 개인 삶의 제고 같은 명확한 정책 목표가 선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디지털 형평법이라든가 영국의 평등법, 일본의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등이 이미 수립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관련법의 정합성을 검토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관련 있는 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고요. 기본적으로 2009년 5월 22일 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특히 디지털 격차에 관련된 일부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9일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와 있지요. 결국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디지털 포용 개념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능정보화법이 지능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인력 양성 이런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서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상충되지 않고 개별법으로서 디지털 포용법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용 정의 조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국제적 정책 개념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두 의원님께서 낸 발의안에 ‘지향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향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과 더불어 가치 추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법에 있는 것 혹은 유엔의 라운드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수립 및 검토 가능한 추진체계에 관한 것인데요.

두 의원님께서 낸 법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두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두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법안을 수립·확정한다, 시행방안을 수립·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안을 변경하거나 시행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교육하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디지털 포용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포용위원회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기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전문기관을 둘 것이냐 아니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이냐인데,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매년 재원 확보와 전문인력의 운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이미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기관을 전문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재원 확보도 용이할 뿐더러 전문인력의 운용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해외 사례

를 봐도 공공기관 중에 이미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지털 역량 함양 및 디지털 역량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수준 및 교재 개발 등에 관한 규정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의원님께서 낸 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교안·교구·교재 개발 혹은 실태조사를 통한 지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포용 구현에 있어서 민간 참여 확대의 실질화 방안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낸 안에 보면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만 재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피해를 보고 하는 분들은 국민인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재량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 정책 실행 과정에 그리고 어떤 수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 완화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낸 법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인정보제공기라든가 이런 곳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부분 등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모든 사업자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업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주셔야 조금 더 용이하게 디지털 포용법의 시행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서 주요 선진국이 이미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포용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 후 빠른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문정 교수님 진술을 들을 차례이나 저희가 국정감사 계획서 챕터 등을 상정하고 먼저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될 때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류하였던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챕터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두 위원 상정하고 나서……

○위원장 최민희 의견 있으세요?

○최형두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최형두 위원 이 국정감사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지금 총 한 20회쯤 되나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통위하고 방송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나 방심위 자체보다는 아마도 관련 기관에 대한 청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일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든가 기술정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오히려 그쪽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다뤄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국회 상임위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로지 YTN·TBS 관련 증인신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7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하고 또 10월 14일 날은 방송사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방송·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게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더구나 사실 이것은 공영방송이기는 하지만 이미 100일 동안 다뤄 왔던 일인데 국정감사에서까지 다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부족한 다른 일정을 좀 늘리면 어떨까 싶은데, 예컨대 10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하는데 우리 황정아 위원님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려 53개의 기관을 합니다. 한 청문회 장소에 53명의 기관증인을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를 한 이틀 정도 할애해서, 특히 대전이 우리 과학기술 연구의 본산이고 한 만큼……

○위원장 최민희 더 드리세요.

잠깐만요.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지금 10월 17일 정말 이렇게…… 이 기구 하나, 이 연구재단이나 기술원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큅니까. 이것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또 이준석 위원님이나 이해민 위원님도 충분히 다 아실 대목이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이렇게 무려 53개의 기관이 몰려 있는 이것은 우리가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이삼일로 나누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방송사 이슈들까지도 같이 물으니 이것은 그냥 방통위·방심위 하루 때 다 몰아서 하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술인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의 의견 조정 때문에 진술인들의 시간을 더 뺏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0시20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최문정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문정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디지털 포용 법안 공청회 진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서 신민수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 커버를 해 주셔서 앞서서 커버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디지털 포용 법안의 배경 및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사실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난 30년간 지능정보사회는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를 겪었고 사실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각각 개인이 몇 세인가, 즉 연령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도입은 주요 일자리에서 은퇴한 연령대의 고령자는 교육 및 직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마치 평생 한국어만 사용하면서 살아오다가 노인이 돼서 세상이 외국어만 사용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평생 한국어만 사용하다가 노인이 되어 영어를 쓰는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것과 같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무인정보단말기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편화되었는데 터치스크린과 시작 정보 중심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Aging & Technology Policy Lab은 올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표적집단 인터뷰를 시행했는데 이에 따르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터치스크린 기반의 도어록, 아파트 인터폰, 키오스크 등을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속도를 감안할 때 기존에 존재하던 디지털 격차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격차는 일시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할 시점이 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및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합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집행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안 체계 관련해서는 고동진 의원 대표 법안은 디지털포용법안으로 명명을 했고 박민규 의원의 대표 법안은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으로 제안을 했으며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구조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각 장에 대한 설명은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체적인 총칙 그리고 정책 추진체계, 디지털 역량 함양, 그리고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그리고 활용 촉진,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두 법안에 좀 차이가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포용 개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법안에서 정의한 디지털 포용의 정의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였고요.

박민규 의원안은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나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단어에 있어서 ‘소외’랑 ‘배제’라는 단어 차이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본 법안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소외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배제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혜택을 고르게 누린다’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인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서 신민수 교수님께서도 ‘지향점’이라는 단어의 모호함과 추상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방향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향점이라는 단어는 법안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물리적·사회적·정책적 환경 조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러면 과연 디지털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정의의 문제 가 있는데요. 역시 두 법안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상이합니다.

고동진 의원안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기기·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요. 박민규 의원안에서는 정보격차 피해를 좀 더 강조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이란 표현에서 이 ‘정보

격차’라는 단어는 디지털 격차의 여러 레벨 중에서 하나의 레벨에만 국한시켜 피해 유무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이라는 표현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이 존재해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표현은 정의가 또한 너무 광범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법안의 취지에 맞도록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상의 대상은 일상생활 필수기술인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기기와 서비스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서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관련된 제안점입니다.

저는 디지털포용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안된 법안들은 디지털 포용 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이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고 제안했고 박민규 의원안은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섹터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관련 법안과 연계되는 정책인데요.

제안된 법안들 중에서 제3장 디지털역량 함양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들을 제시하시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 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의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포용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되는 법안에서 노인복지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동진 의원안과 박민규 의원안은 법안들에 대해서 전문기관 지정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점을 보이는데요.

고동진 의원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고 박민규 의원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경험이 축적돼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역량이 쌓여야 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본 법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NIA의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여러 부처에 관련된 많은 시행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사 정책과 사업들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를 효과적이고, 연계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능정보제품과 보조기구와의 호환성인데요.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에서 박민규 의원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요즘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보조기구와 지능정보제품 간의 호환성인데요. 이 부분을 좀 명시해서, 앞으로 디지털 격차에서 난제 중의 하나가 두 기기 사이의 호환성 문제이기 때문에 디지털포용법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이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뺀 10월 21일 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사는 10월 7일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합치고, 그리고 10월 17일 목요일에 대한 53개 기관을 하루에 끝내는 게 불가하다는 지적 또한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구체적인 날짜 조정에 관하여는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까요?

○최형두 위원 아니……

○위원장 최민희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지금 항의가 즉시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최형두 간사님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틀로 늘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지적하신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건은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 하루로 빼져 있었는데 10월 21일 건은 10월 7일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합쳐서 통합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월 17일 53개 연구재단을 비롯한 연구원에 관하여 하루에 하는 것이 무리다라는 지적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되……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현 위원** 17일과 21일.

○**위원장 최민희** 예, 17일과 21일 일정이 조정된 것이고요. 17일 일정은 이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 7일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해서는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감사 계획서는……

○**노종면 위원**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세요.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10월 24일 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전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방심위도 포함되는 거겠지요?

○**위원장 최민희** 예, 들어갑니다.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감사 계획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이고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86개 기관입니다. 또한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10월 14일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제가 좀 아까 최형두 간사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배부해 드린 대로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최민희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어제 기준 총 1만 3026건 자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최민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상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국장급·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는 등 총 364명으로 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의 기관별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대로 기관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인사이동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차후 간사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관증인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0시38분)

○위원장 최민희 이제 공청회로 돌아가면 되지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준석 위원님부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신민수 교수님 먼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디지털 격차를 다루는 내용을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포용을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얘기한 디지털 인클루전(digital inclusion) 관련해 가지고 직역해서 나온 단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국문으로 번역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포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감이 와닿지 않는데 차라리 이 법안이 격차에 대한 부분을 더 법안명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민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UN에 보면 디지털 포용이 디지털기술·서비스 및 관련 기회를 공평하고 의미 있고 안전하게 사용·주도 및 설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기술 면에서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는 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활용 능력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술의 접근성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딥페이크 같은 것도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리터러시까지 포함한다면 디지털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까지 들어와야 포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디지털 격차만으로 할 경우 제한적일뿐더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사항과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준석 위원**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모호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지금 있는 내용들도 보면, 그 안에 보면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신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 위원회나 아니면 여러 기본법이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다투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 사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01년까지만 해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률 신설보다는 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도 설명해 주셔 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거든요.

○**진술인 신민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어떤 정책, 정보화 사회에 대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의 내용, 시행기관, 교육인력 양성·육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된다고, 이 내용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포용

이라는 개념과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격차 해소는 아주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확장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부개정 갖고는 좀 어렵고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취지부터 바꿔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95년부터 시작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어 온 그런 일로에 있는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으로는 아예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진술인 신민수** 그게 조금 더 포용이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최문정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보면 장애인들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을 다룰 때 이것이 그러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걸 더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규범화시켜 가지고 그런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방향성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여쭙고 싶거든요.

○**진술인 최문정** 굉장히 인사이트풀(insightful)한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장애의 사회성 모델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방향입니다. 개인을 재활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서 비장애인처럼 사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꿔서 장애가 아예 사라질 수 있게, 그 장애라는 개념이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건데……

사실은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몇 %가 이거를 배워서 쓸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오후에도 AI 기본법도 있지만 이제 그 AI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임파워(empower)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한 게 이번에 디지털 포용법인데 그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증거 기반으로 하는 역량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걸 질문했던 이유가 사실 디지털 역량을, 지식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넓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도 그걸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마켓이 커지는 거니까 많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이번에 신설되는 법안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의견으로 보탰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먼저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연구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몇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법,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용이라는 것이 인클루전(inclusion)에서 온 번

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 이준석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디지털 인클루전 자체가 사실은 격차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리터러시랄지 심지어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랄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주신 정의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본법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법이 함께 제정이 되면 혹시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본법에도 영향평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 진흥을 위해서, 안정적인 진흥을 위해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이중 규제가 되는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AI 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민수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진술인 신민수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법의 정합성이 꼭 필요한데요. 약간 다른 점은 AI 기본법,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의미가 분명한 건데 왜냐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사실은 최근에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룬다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고요.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전에 기본이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룬다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AI 기본법을 디지털까지 포함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을 다 AI 관련된 진흥이나 규율 체계에 넣는 게 적합할 거나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맞습니다. 그 범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하나가 하나를 또 포함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신민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2장에 보통 있는데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에서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진술인 신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심지어 각 분야별로, 애플리케이션 분야별로 서로 다른 지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영향평가지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나? 하지만 법안은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너무 또 구체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있으신지 최문정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영향평가지표를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조금 생깁니다. 무슨 제안 있으실까요?

○**진술인 최문정** 명쾌한 답안이 있는데요, 여가부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법이 있고 그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3, 4년 전에 AI 전문인력 분야에서 성별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 사실 법에서는 이거와 유사하게 그런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고 만일에 그게 판단이 되면 권고로 해서 바꿔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집행되는 방식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뭐 법체계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사실은 많은 툴들이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영향평가는 마치 환경 문제처럼 CO₂가 나오면 몇 점, 100점 만점에 32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개량화하는, 쿼ント파이(quantify)하는 거는 사실은 연구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수치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민 위원** 정성평가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술인 최문정** 예, 정성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민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포용의 정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안은 예를 들면 얼마나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키오스크나 UI/UX 수준의, 범위가 너무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디지털 격차는 최문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차원의 법안 체계를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 시간 제한이 있으셔서 말씀을 짧게 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마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최문정** 대표적으로 아마 여기 위원분들 중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Large Language Model), GPT 이런 거를 얼마나 자주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설문을 해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고 그래서 중간고사·기말고사 때 확 사용자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미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 격차인 것 같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만일에 여기 있는 위원분들께서 지금 대학생이라면 AI 시대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실 텐데 아마 지금부터는 배워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기술은 발달하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신체조건, 특히 요즘 카톡부터 모든 게 다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지속되는 문제이고 문제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 최형두 간사님, 김현 간사님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먼저 신민수 교수님과 최문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민수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제13조—제가 낸 법안—디지털 역량 교육의 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제15조 교육 표준교재 관련돼서는 과학기술부가, 이렇게 좀 구분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무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좋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냈던 취지는 어쨌든 전반적인 교육과 시행 관련된,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나왔지만 전문기관 지정에서도 NIA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한, 업로드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예산 낭비나 일련의 조직 중원 없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업무 조정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지만 표준교재를 만드는 부분은 과기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신 교수님 말했던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면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종합적인 표준교재를 만들고 그거를 시행을 할 때 막상 교재 개발에서도 그 지역에 맞게끔 언어를 바꾸는, 여러 가지의 것을 지역 로컬라이즈해서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무를 명확히 규정을 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진술인 신민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디지털 역량 수준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역량 수준이라는 것을 지역별로 아마 특성이 있고 계층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수준 자체가 표준화돼서 전국적으로 측정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바꿀 거나가 나와야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 표준적인 수준 자체를 만들고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교재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아마 지역별로 합당하게 맞춤형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책무의 수준의 차이가 정확지 않다면 상충되거나 혼선이 있어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박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드리면 최문정 교수님 관련된 거랑 연결되는데요, 민간 참여 확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문정 교수님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NIA라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량과 인력과 그걸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만들었던 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였던 거는 민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AI, 디지털 격차에 대한 정의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문성과 민간의 어떤 앞서가는 부분들을 채용하는 어떤 공간을 열어 주기 위해서 전문기관 지정도 ‘NIA 및 관련 기관 단체’로 하면 어쨌든 과기부장관이 그때 그때 따라서, 지정이라는 거는 매번 몇 년에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괜히 법안 개정을 또 할 필요 없이 법률에 좀 더 과기부에게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민간 확대의 실질적 방안을 더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도리어 과기부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민수 교수님이 했던 민간 참여 확대는 매우 중요하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제 개인적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문정 교수님께도 NIA로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 또한 과기부장관에게 ‘및 관련 기관 단체’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어찌 보면 반론 의견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위원님들 다 같이 논의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민수 교수님이 정말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격차 관련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부분, 대개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소위까지 해서 논의를 하겠고요.

제가 좀 더 최문정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노인복지법 관련해서는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다 얘기해 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법안을 낸 취지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관련돼서 과학기술부에게 법률로서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도리어 안 좋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지금 이 두 법안에서 가장 큰 차이로 최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별도의 위원회를 둘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민규 의원님 법안에 보면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동진 의원님의 법안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게 기존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여기를 활용해서 하자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문정 교수님께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박민규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안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별도의 위원장을 한 명을 선임해서 공동위원장은 두고 또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실무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일종의 정부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역할로 이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니까?

○진술인 최문정 사실은 두 안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고동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은 사실은 기존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이제 활용하자는 거고 박민규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디지털포용위원회인데요. 계속 같은 논의가 이제 포용의 개념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격차 해소는 뭔가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타깃해서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딱 가서 고치는 거지만 건강 증진 같은 단어들은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에서 계속 디지털 과의 격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사실은 그 산업을 진흥시키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포용위원회는 훨씬 더 큰 범위의 위원회인데 좀 더 큰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디지털 관련 과학기술이 발달될 때는 개발하는 처음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이랄까 그런 논의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게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훈 위원** 신민수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민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맥락이 제 판단에는 어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술선택론이 있고 하나는 사회선택론이 있습니다. 기술선택론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기술을 채택해서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식이고요. 사회적 수용론, 사회적 선택론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용은 사회적 선택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이쪽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술……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개념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고동진 의원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진술인 신민수**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박민규 의원의 안을 보면 실무 위원회까지 하면 예를 들어 한 40~50명 이상의 별도의 조직이 생겨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물론 디지털 격차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고 특히 앞으로 AI가 고도화될수록 이런 격차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여야가 다 공감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술인 신민수** 만약에 전문기관에 대한 말씀이시라면 제가 오해한 것, 디지털포용위원회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하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전문기관에 관한 거라면 말씀하신 NIA 같은 경우가 이미 디지털 포용, 디지털 격차에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도 일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기관을 지정할 경우 그런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다시 구성하고 특히 이런 디지털 포용이라는 작업이 사회의 여러 단체, 협회와 네트워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관이 과연 그런 거를 구성하는 데 얼마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기존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이 일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박정훈 위원** 과기부장관을 지금 간사로, 박민규 의원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 체계나 위원회를 둘 때 사회적인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최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분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려 주신 부분, 수정의견에 내놓은 디지털 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주신 것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신민수 교수님, 최문정 교수님 설명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포용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디지털기술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디지털포용법안의 주요 항목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역량으로 보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청회를 국회방송과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공청회를 보는 것 자체도 디지털 격차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민수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역량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또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신민수 교수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신민수 우선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것이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개인의 데이터가 플랫폼에 많이 쓰이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동의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은 자기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쓰이는지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짓 뉴스나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 문제구나’ 느끼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얘기는 벌써 어떤 거냐면 정보통신기술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본인의 상황이나 혹은 그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과 관련돼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ICT를 이용해서 접하는 정보의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독자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에 맞게 사용하고 자기의 발전에 사용할 것이냐인데 그런 면에서 격차 해소만 가지고는 어렵고 포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능력을 언급하는 이런 것까지 확장되는 법안 제정도 역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문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현대사회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접근하고 활용하는 정보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게 되고 그렇게 생성된 정보들이 또 새로운 사회,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정보생산 과정에 참여하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정보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이 디지털 시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인식, 편향된 사회를 만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활용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용자에게 배우고 습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그들도 스스로 정보생산의 주체로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최문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 한국노년학회에서 세계보건기구랑 함께 고령친화도시 관련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사실 WHO 기조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인데 사회 참여를 하려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그것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고령자 유튜브 관련 연구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플루언서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성취감이 자기효능감입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내가 정말로 정보를 생산하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사회에서 정말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에도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신 교수님, 디지털 역량의 함양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디지털 역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술인 신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량지표를 개발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량지표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기술을 이해하고 있느냐, 혹은 디지털기술을 얼마나 써 봤느냐, 몇 시간을 썼느냐 이런 수준의 것은 이미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디지털기술을 식별하거나 혹은 디지털기술을 이해하거나 디지털기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거나 디지털기술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지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까지도 확장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전데 이거는 조금 더 디지털포용법에서 이것까지 포함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위원** 최 교수님, 디지털 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이 디지털 포용법안에 담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진술인 최문정** 지금 디지털포용법안이 워낙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표발의안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 충분히 담고 있어서 앞서서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내용 조금 수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민수 교수님 글을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리가 장관 선언 이대로 2022년에는 이미 ‘디지털 권리와 원칙—유럽 시민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라는 이런 큰 아우트라인 이 제시되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또 EU의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 실행계획, 디지털 시대 유럽 차세대 EU 수립, 디지털 정책 수립과 디지털 역량 개발의 기초 프레임워크인 DigComp 2.2 이렇게 개편됐다고 합니다. 영국에도 디지털 인클루전 스트레티지(Digital Inclusion Strategy)가 벌써 2014년에 나왔는데, 이를 위한 스트레티지가 2017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좀 송구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가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큰 격차 중의 하나가 교육 격차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중의 하나인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데 예컨대 우리가 교육 격차를 위해서 AI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든가 새로운 기기 또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학부모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또 걱정이 많아요. 이게 문해력을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디지털 기기의 많은 이용이 뇌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든가 이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과 함께 또 포괄적으로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국가 중의 일부는 몇 세까지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육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왜 이게 디지털 격차냐 그러면요, 지금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하는 세대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마산에서 초중고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컨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온다는 것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공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좌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 서울 대학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야말로, 일대일 이런 교과서야말로 이런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 특히 먼저 디지털 기기라든가 또는 먼저 훌륭한 교육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차별, 교육 환경의 차별을 결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칸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것 들어 보셨지요, 칸이라는 인도 출신의 MIT 석박사 과정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인도에 두고 온 자기 조카를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 온라인으로 수학과 자연과

학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서로 익숙해지고 또 서로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나중에 그것을 녹화를 해서 조카에게 보내 줬는데 이게 조카가 공부로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해서 이웃 친구들에게도 공유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금 칸아카데미라고 해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큰 빅테크들이 전부 후원을 해서 전 교과 과목을 수준별·단계별로 굉장히 모듈화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고 굉장히 큰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런 것도 정보격차 때문에 강남의 학부모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굉장히 모듈화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했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를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남에서 화제가 되고 좋다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예컨대 산수, 수학 그러면 1번, 수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합니다. 넘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벡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모듈화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워낙 강남에서 문제가 되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재단에서 이것을 한글 자막을 달아 줍니다,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콘텐츠만. 그래서 비로소 시골에 있는 선생님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에서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네이버가 자막을 달았던 바로 칸아카데미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폐교 위기에 있던 대구 달성군의 어느 초등학교 하나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의 선봉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AI 디지털 교육으로 우리가 획기적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조금 여유 있는 계층,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에서 문해력의 저하, 디지털 기기의 건강의 위험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이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해 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떤 해법과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진술인 최문정 사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제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과학기술이 의도와 다르게 많이 쓰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에서도 세이프티(Safety), 트러스트(Trust) 이런 정책 부서가 커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도로 이 기술이 오면 좀 더 평등이 되고 격차가 줄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그림에서 정책이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세심하게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칸아카데미처럼 열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AI 교과서나 말씀하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좀 더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고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슈라서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 이슈하고 또 조금은 다른 차원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하시고 김현 간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소외를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능력,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의 상징적 텍스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 또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되는 맥락에 대한 지식과 객관적 품질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그리고 네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참여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조 능력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관련 기술과 서비스 등이 발전했어도 리터러시 분야는 매우 취약하고 좀 지난 자료지만 2021년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 평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OECD 평균이 47.4%인데 우리나라에는 25.6% 정도, 아주 하위권으로 나왔는데 이런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고 왜곡된 내용을 걸러 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인데 아까 신민수 교수님께서 공청회 진술문에 해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전담기관을 언급하셨는데, 전문가 두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언급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발의된 여러 제정법들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신민수** 우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와 그다음에 비판적 분석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이기는 하나 지금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에 아마 그것은 하위법이나 시행령 단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될 부분은 디지털 역량에 대한 수준 평가, 지표 개발 이런 데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온다면 연계돼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기 위원**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문정**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취학연령의, 교육의 영역에 있는 아이들의 리터러시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생애주기의 디지털 소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OECD 데이터는 저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대상을 한 걸로, 측정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함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을 입법 의뢰 중에 있어요, 이 기본법, 제정법 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신 교수님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준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 신민수** 지금 디지털 포용법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보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미디어까지 확장되는 거여서 만약에 미디어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면 법의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서 미디어 쪽을 별도로 다루거나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훈기 위원** 최 교수님도 의견……

○**진술인 최문정** 저도 그런데 기준에 있던 많은 측정들이 사용 역량인데, 말 그대로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슈는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는,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아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기능이 있어서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돼서 시행령이나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인데 사실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이 법적 체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 약자나 노인분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신 교수님이 키오스크의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용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은행 업무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명문화시켰어요.

그런데 단지 그게 지금 신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어디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어디에 설치한다 이런 것은 정부의 책무로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는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신민수** 저는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예를 잠깐 들면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약정을 하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도 잘 안 보이고—현재 있는 것은—이해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노인 전담센터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대리점·판매점에 고령자 전담 대리점, 고령자 전담 판매점을 만들자 이래서 그게 굉장히 고령자들한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책무를 가진 영역은 아마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조건 디지털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장겸 위원**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위 디지털 포용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인데 이것을 이 범위를 SNS 과의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 범위 제한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딥페이크 이런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용까지 지능정보기술에 이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안 내용에?

○**진술인 신민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딥페이크라든가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기술이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 AI가 지능정보화 기술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AI 기본법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 부분을 거기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디지털포용법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AI 데이터 리터러시의 어떤 큰 집합이지만 그렇다고 디지털포용법, AI 기본법이 포함되는 영역이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AI 기본법도 필요한 법이라서……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저는 그런 내용을, 조문을 넣었는데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신민수**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4년 동안 어느 정도 이게 역량이 강화됐거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목표치에 달성이 됐는지를 한번……

○**진술인 신민수**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것이 분석됐는지를 제가 아직은 팔로우를 못 하고 있어서요.

○**김현 위원** 없지요, 예.

○**진술인 신민수** 그래서 이제 담당 기관이나 부처에서 아마 고민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함양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관심 있는 통신 분야를 봐도 노인분, 고령자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런 경우로 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비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나, 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뒤에 계신 차관님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답변을 하셔야 될 주제를 제가 미리,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하 담당자들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로당 실적을 받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적용되는 데도 아주 적은 규모로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거냐 아니면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라고 주로 썼는데 포용이라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증진법을 만들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차이는 그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거고 지금 이제 대표발의한 고동진 의원은, 지금 아마 이게 당론이지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 같습니다. 108명 전체가 다 이 법안을 발의한 거라서 이제 조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 차관님은 시급하다 빨리해 달라,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그랬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신 교수님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좁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법은 기존의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박민규 위원님은 별도 포용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힘을 실어 주자, 좀 더. 이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진술인 신민수** 기술의 진흥과 국민적인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삶의 제고는 방향은 똑같은데요 방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술의 진흥은 국민들이나 혹은 취약계층이 이 기술을 다 써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사회 전반에 어떠한 삶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포용은 그것의 어떤 부분집합 내지는 후속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인력 배치도 돼야 되고. 사실은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금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진술인 신민수** 알지 못합니다.

○**김현 위원** 차관님, 어느 정도지요? 지금 이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 규모 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강도현 차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디지털 배움터는 250억가량 그리고 지역의 디지털 빌리지 작성에는 약 한 800억 정도……

○**김현 위원** 그러니까 한 1조가량, 한 1000억가량 정도 든, 1000억가량,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000억 정도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R&D 이런 것들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김현 위원** 그게 그러면 4년으로 치면 한 4000억 정도 지금 들어간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김현 위원** 4000억 정도 들어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배움터 쪽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빌리지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53개 시로 따지면, 자치단체 규모로 따지면 아주 극소수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 전체 규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포용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김현 위원** 포용이 아니라 일부, 디지털 일부 역량 강화가 된 거지요, 일부. 포용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일단 앉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관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재정 지원하고 대책이 만약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가능한가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개별법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사실은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정리하는 심의 의결 기구이지만 그게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산 문제보다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전문 위원회를 통해서 둘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법안이 하나는 발의가 되어 있고, 고동진 의원님 그렇게 발의돼 있고 다른 한 법은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게 박민규 의원님의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지금 15조에 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가 이제 박민규 의원안에는 있고 지금 고동진 의원안에는 또 없다는 점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 잠깐만 제가 성함을…… 카이스트……

○**위원장 최민희** 최문정 교수님, 최문정.

○**김현 위원** 죄송합니다.

최문정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개념을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7분 주세요.

최문정 교수님, 사실은 리터러시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오기 전에 미디어리터러시부터 되게 역사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은 많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걸 수업 시수로 해 주지 않는 한 사실 효율적인 교육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육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접근성을 높인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장애가 있는 분들의 개별적 장애를 고려한 기술적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원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술인 최문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장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장애 유형의 특징이, 우리가 흔히 장애인 하면 생각하는 휠체어를 탄 분은 좀 줄고 있고 발달 장애인과 그리고 이제 시각·청각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쟁이신 분부터 이젠 좀 많이 안 보이시는 분까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거에 어댑트 해서 하는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이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기기 분야는 사실은 그 마켓이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켓이 형성되고 또 경쟁을 하

고 그리고 큰 기업들이 오고 스타트업이 오면서 막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분야 자체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적어서 발전이 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점은 이제 AI, 특히나 멀티모달 AI가 나오면서 이번에 오픈 AI에서도 멀티모달 AI로 광고할 때 시각장애인 택시 부르는 걸 보여 줬거든요. 그것처럼 이젠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줄이면서도 개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앞서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 이 대목에서 강도현 차관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핵심은 우리가 디지털 격차 해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포용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해서 해석하면 그런 세분화된 맞춤형 연구도 어렵고 그 기술개발도 장애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포괄하면. 여기서 국가가 나서야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관련 예산, 우리가 법이 통과되고 지금 AI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되겠지요, 들어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체제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저희 아시지요, 이제 22대 과방위는 끝까지 쟁기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끝까지 쟁기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최문정 교수님도 이 과정에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리터러시 교육이 최소한의 소외 혹은 소외를 막을 수 있다면, 뭔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앉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는 박민규 의원님 보면 표준교재·맞춤형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된 분야에 그런 맞춤형 교재를 만들 인프라, 맞춤형 교육을 할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거는…… 교수님, 신민수 교수님 먼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인프라는?

○진술인 신민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뭐 디지털 교재 개발 정도에서 저는 이루 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꼭 그렇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오히려 뭐

대체 학습집단을 만든다거나 대리 학습집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지원의 수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교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디지털 교재를 보고 배워라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는 배울 수 없어서 대리학습자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모방해서 학습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고요. 혹은 사회 집단 단위로 하거나 가정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건 역시 강도현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만들고, 그렇지요?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쭉 진술해 주신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격차 해소가 아니라 포용으로 나가겠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소외나 장애나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진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를 오래 해서 신민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포용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기관이 이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실질적으로 할 것, 집행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 발표문을 보면 해외사례를 보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 그래서 이제 과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지정 기관을 EDMO(유럽디지털미디어판촉소), 미국은 디지털 에쿼티 액트(Digital Equity Act)에 따라서 미국 국가통신 및 정보관리국(NTIA), 프랑스는 CLEMI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센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기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얼핏 우체국이야말로 이게 최적화된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런고 하니까 우체국이 포스트 오피스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디지털 포용의 아웃포스트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이 과연 우편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오히려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이 쉬운 위치에, 방방곡곡에 다 있고 그 공간과 이런 것도 있고 또 젊은, 배달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마치 우편물을 배달하듯이 접근하기도 좋은 체제 같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관을 지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우체국의 조직과 직제 또 건물, 또 현재 배달 시스템 이런 것을 결합시키면 우리 우체국이 디지털 포용에 훌륭한 아웃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신민수 해외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특정 기관들이, 전문기관들이 하는 일은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모범 사례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재의 유통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 어떤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문기관이 있어도

지역별로 전문기관이 다 존재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지역에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교육, 교재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전문기관과 우체국이 연합을 해서 전국에 교재를 전달하거나 혹은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우체국이 사용되고 전문기관에서 교재를 개발하거나 교육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디지털포용 법률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하였던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7일 방통위와 함께 방심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기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 등을 이틀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LG AI연구원 배경훈 연구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환경 변호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환경 방금 소개받은 고환경 변호사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진술을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제화의 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에 맞게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해서 인공지능기술 기업 육성과 인재 유치, 유출 방지 등 진흥 정책에 방점을 두는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인공지능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 위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일관된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안전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규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핵무기에 빗대거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 멸종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응 스텐퍼드대 교수는 미국 상원의원 AI 인사이트 포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인공지능을 핵무기에 빗대는 것은 실질적인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인공지능 법제화는 인공지능의 과장된 위험에 대한 규제의 신설 강화가 아니라 실증적인 위험 또는 위해를 규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법안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EU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인불가, 고위험 인공지능 등을 구분하고 개발자, 이용자, 수입업자 등 각 주체별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7%,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기반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도하고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규제 자체

도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내 기업 등 EU 인공지능법의 수범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EU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까지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EU 인공지능법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EU 권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미뤄지고 소비자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애플과 메타는 EU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보류 또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EU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식이 규제 준수 비용을 지나치게 높여 결국 일부 빅테크나 대기업들만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출현이 어려워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증적인 위험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인용한 앤드류 응 교수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 개발 LLM 모델을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해외 유명 LLM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와 제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AI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강한 규제프레임으로는 경쟁에 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에 따른 위험을 적시에 적절하게 담아내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규제프레임에 기초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대다수의 인공지능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과 같이 자율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규약의 제정·시행이나 인공지능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 보안, 소비자 보호 등을 기준 법체계하에서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법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 개정 논의에서처럼 기본법은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 개별 법률에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술기업과 산업을 육성해서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격변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약 28%로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인공지능 기술 수준, 경쟁력은 미국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에 따라 특기자 이민비자, 고학력 이민비자 요건에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경로 확대, 인공지능 관련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 혁신 엔진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자 요건 완화 등 외국인 창업 규제의 완화, 정부 차원의 GPU 확보 및 무상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창업 1년 만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도 인공지능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규제 또는 분쟁 리스크가 있는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에 관한 적극적인 법제도적 지원 그리고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육성뿐 아니라 유치, 유출 방지 등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 법안에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 법안은 대부분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위한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행정명령은 백악관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입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서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도 조속히 설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규제 상황, 특히 EU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제도 운영이나 미국 등 인공지능 프론티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규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에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요 인공지능 사업자가 위치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 안전법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 규제프레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법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의부터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배포 이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고 단순히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서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행정명령도 AI에 관해서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법도 그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해외 규제와도 상호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합리적 정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훈 연구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경훈 LG AI연구원 배경훈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진흥 및 규제정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증기기관이나 전기와 같은 범용 기술로서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질병 예방 및 조기 진단으로 인간 수명 연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적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1970년대 4.5명에서 현재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기준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위험 작업 대체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 AI 기술 도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았듯이 전염병의 확산 예측, 감염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되어서 그 가치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미 선진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시스템의 자동화 그리고 병리 이미지 분석 등을 통한 의료 지원으로 보건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기상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고 최적의 에너지 공급량을 제안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된다면 그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서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 우리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AI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외부 레드팀을 통해 AI 알고리즘과 모델의 편견이나 오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 문헌을 학습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윤리원칙을 지키는 것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신뢰와 직결되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AI 규제는 기술 자체보다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열린 뮤헨안보회의에서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선거 악용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생성 AI 결과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딥페이크 콘텐츠를 탐지하며 일반 대중의 AI 리터러시를 증진시켜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기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도 그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AI 규범과 정합성을 고려하되 EU나 미국 등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접근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AI 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접근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의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EU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EU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EU 내 AI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지향의 자율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백악관의 AI 인프라 리더십 라운드테이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건설에 육군 공병대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주요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부 선진국의 AI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AI 기술의 경쟁력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특색에 맞는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국과 EU의 AI법과 정책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는 인권 보호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싱가포르 등이 규제보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AI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영국의 토퍽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팔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3위와 10위 간의 격차가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별 AI 경쟁력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금 AI 혁명의 초입에 서 있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혁신을 장려하고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AI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쌍을 자르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AI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AI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은 책임 있는 AI 연구개발·활용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사회는 AI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AI 윤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AI 시대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그 위험은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AI 기본법이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여기 계신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익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유승익 22대 국회 과방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거나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시민사회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방위에서 상정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인공지능 법안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 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입법이고 글로벌 입법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성을 보이고 있고 법제 간 통용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대한민국 국회가 갈라파고스화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인공지능 법안과 관련돼서도 세계적인 글로벌 입법의 차원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통용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입법의 경로 그 자체가 일단은 진홍 위주로 선입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후보완한다고 하는, 사실 개문발차식의 입법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입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진홍과 규제가, 지금 이원론적으로 진홍 아니면 규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진홍 자체는 진홍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고 인공지능의 현실적 위험성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입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 입법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유례가 없는 졸속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쟁점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 한 아홉 가지 정도로 뽑아 봤는데요, 그 쟁점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계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대개 비슷비슷한, 사실상 서로 참조한 듯한 법안 체계를 보이고 있고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연성 규범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돼서는 이 법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신중해야 될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 모두가 인공지능 정의부터 굉장히 부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입법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법안에서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정의 그 자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조금 응용하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 표지를 덧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화 기술 그 법 자체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OECD 정의를 주로는 따릅니다. 그래서 이 OECD 정의를 한번 읽어 보시고 지금 현재에 발의되어 있는 인공지능 정의와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법자 문제인데요. 주로 발의 법안과 관련돼서 수법자를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뭉툭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EU AI Act 등등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그냥 제공자, 운영자, 디플로이어(deployer)라

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전체에서 세세하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과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누구에게 진정해야 될 것이냐, 누구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돼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구를 규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사실상 규제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AI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AI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구글과 관련돼서도 규제기관은 기관 간 기구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 뭐…… 법은 없는데요 대통령령을 통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인공지능과 관련돼 가지고 별다른 규제나 어떤 감독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금지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금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 자체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국민의 안전·위해·건강 이런 데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질서나 사법체계 그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금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안 등등 빼고는 금지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 선거, 출입국 관리 이런 주요 공공영역이나 산업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이런 데 있어서 고위험으로 지금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인권 위험과 관련돼서는 채용, 대출 심사 이런 것들만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걸 정의하고 있거나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과 제너럴 퍼포스(General Purpose), 범용 인공지능은 다르다, 다르게 규율해야 된다.

투명성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돼서는 고지 의무, 표시 의무, 등록 의무를 규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안에서는 고지 의무나 표시 의무는 규율을 하고 있는데 등록 의무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 형법이나 형사법에서 규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약에 제정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이 형사법적인 요구, 여기에 반드시 인공지능 기본법안도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 조항이든 기타 등등의 조항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제공자 또는 디플로이어·운영자 등등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범, 국민의 권리……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는 범주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계정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계정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등등에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 진정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 조항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마지막은 별칙 조항인데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규제를 위한 인공지능의 실효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수사는 국회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경진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경진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입니다.

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미래사회 경쟁력이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그동안의 이런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을 계속 이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AI가 몇몇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서 분명히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자유를 제약하거나 또는 기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성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서로 간에 충돌하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형태로 규제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논의하는 AI법은 그게 기본법이 됐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AI 생태계,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한 AI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10개의 법안을 보면 적어도 목적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규율 대상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 법안을 보면 대부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개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과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 모델 이 세 가지

가 보통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기술적이고 어려운 얘기라서 실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보편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법에서 쓰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실제 그 개념 정의에서 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개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서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EU 인공지능법도 그렇고 해외의 많은 법제들이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 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체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현재는 우리가, 최근 들어 가지고 LLM 기술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과방위 차원에서의 기술을 다루는 법이라면 기술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념이나 인공지능시스템에서 기술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이 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EU AI법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율을 하고 있고 제한적인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AI시스템을 규제 대상으로 삼되 불가피한 경우, 특히나 최근에 딥페이크 같은 데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GPAI 혹은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적인 범위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은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역시나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규제 대상을 삼을 때 위험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향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성능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사실 논의가 됩니다.

고위험도 있고요 고영향도 있고 고성능도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위험만 따지고 보면 아직 현실화된 위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의 위험을 기반으로 규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법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때 과연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EU AI Act라든가 또 미국의 행정명령을 보면 일정한 성능을 규제 대상의 범위 속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러한 성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만약에 진홍 중심의 법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큰 고민 없이 넓은 범위에서의 규제 범위의 대상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많은 고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규제는 매우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간 높은 수준의 규제, 예를 들어 핵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살상무기 같은 것들과 연계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을 다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얼마나 세냐의 문제보다는 규제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나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U AI법이, 제가 최근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전체 해석을 해서, 전체 조문을 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EU AI Act가 비판받는 이유는 도대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법을 만들 때에도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형태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이러한 몇 가지 기준들이 함께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EU AI 관련된 법 제정 논의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AI가 굉장히 많은 분야, 이제는 사실 일상생활이 되어 버렸거든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거나 보편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법은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는 규제가 포함된 헌법으로 모든 걸 다 규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AI가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현재는 주로 AI 기본법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이 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지금의 입법 방향은 꼭 필요한 신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의 입법을 일단 기본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비례적 책임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위협이 됐든, 확인된 위협이어야겠지요. 실제 증거 기반으로 확인된 위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협의 난이도 내지는 경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EU AI Ac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간 규제 체계가 비례적인 그런 규제 체계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시나 그 예측 가능성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례적인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특히나 정말로 규제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기본적으로는 AI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확산과 혁신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뜯어 보면 많은 위험성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 가능한 위험을 바탕으로 규제를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의 AI 수준 높습니다. 1, 2등과 엄청난 격차가 나는 선두 주자거든요. 그런데 선두 그룹이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과연 우리가 선두 그룹이 맞나 싶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더 뛰어난 AI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상호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각국이, 잘 보시면 미국은 법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영국도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당장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다 사실상 시장 진입 규제 형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적합성 평가라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사실상 시장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각국에서 실제 시장에 들어올 때 안전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가 그러한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되어진 기준과 다른 기준을 마련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장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또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선진국에서의 AI 신뢰성 프레임워크와 적어도 호환 가능한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금지인데요, 금지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금지하자는 얘기도 하고요 또 AI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지되어진 행위, 딥페이크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규율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그걸 만들 가능성 있는 어떤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시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GPAI로 나아가고 있는데 GPAI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를 하더라도 특정 어떤 업무나 또는 행위에 기반한 금지를 둬야 될 것 같고 그 금지도 검증되거나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보편적인 금지 행위 또는 금지 업무를 규율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신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AI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이나 허상의 어떤 폐해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현실적인 폐해에 대한 대응이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컨센서스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특히나 핵심적인 법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법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레벨의 법익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AI법이 만약에

규제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규제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것은 일반적인 포괄적 규제가 되어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핵심적인 그런 가치 중심으로 규제가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에 리터러시가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지원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글 하나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해외 사례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조화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맹목적으로 해외 법제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조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선 투명성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 의무는 지금 기본법 레벨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워터마킹 의무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표시 의무 같은 거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의무가 필요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에 딥페이크 음란물 같은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이런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유통되어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어지는 통상적인 콘텐츠라든가 영화 이런 거에 만약에 이런 표시 의무가 계속 게재된다면 영화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은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 의무를 도입할 때에도 우리가 확대적인 범위 내에서의 예외 사항을 반드시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합성 평가 체계나 역량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 사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익,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만약에 범죄자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한다 이런 걸 할 때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영향평가 제도, 적합성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체계나 영향평가 체계를 가급적이면 인센티브 베이스로 기업들이 또는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뢰 가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위해서 몇 가지 특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데요, 현재 샌드박스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샌드박스 제도는 주로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 체계이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을 완화시키거나 면제시켜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이런 혁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뒤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 그 자체 원본을 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안전한 환경 내에서 좀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특례는 저작물을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 동의가 필요 없이 해 주자. 다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낫은 수준의,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런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저작자와의 그런 상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새로운 제안인데요, 공공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은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공공데이터 라이선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은 학습하는 기업에게 넘기고 그러나 실제로 공공데이터를民間에서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라이선스를 뒤 가지고 이 라이선스 평가를 통해서 허용을 해 주고 만약에 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또는 생성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특례가 도입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AI 혁신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공지능법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촉진하고 또 함께 그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AI 혁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려면 그에 따른 일정한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체계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혁신과 인간 가치가 공존하는 또는 공진화하는 AI 생태계를 위한 인공지능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일반증인 채택을 못 했거든요. 일반증인 채택을 오후 4시경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현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해민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까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먼저 네 분의 고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제품에 스며들게 하고 실제로 제품 론치(launch)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진홍이냐 규제냐 이분법으로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홍을 지향하지만 규제 없는 진홍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서 고환경 변호사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 발달에 교통 법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느 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통용될 수 있는 컴퍼러블(comparable)한 규범 혹은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규범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호등 같은 거지요. 신호등인데 15개 등이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용이 가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분 의견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최경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저는 ‘인공지능을 규제한다’ 단어 면에서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짚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규제를 한다라는 문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기술의 한 영역이지요. 수학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기초과학 쪽과 더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식의 규제를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최경진 교수님의 인공지능 단어 사용에 대한 제안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의미적으로는 시스템 혹은 서비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해서 아까 유승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내는 사업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만드는 사업자,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 자동차로 치면 완성품을 만드는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용자 그룹,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아니면 보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인도 포함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규율의 대상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자동차랑 비유한 것을 좀 다르게 비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 데…… 코스모스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그 모델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꽃으로 갔으니까 뭐, 국화라는 회사에서 간기능 수치 측정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기를 의사가 구매를 했고 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가 진찰을 받습니다.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회사 그리고 국화라는 회사 그리고 의사·환자의 역할과 그들의 책임,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의무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네 가지 그룹을 다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익 교수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유승익** 예, 동의합니다.

○**이해민 위원** 두 번째는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지난 7월 30일인가 국무회의에서, 아마 차관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이 됐고 이 위원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위원장, 국가인공지능(AI)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은 정치학자 출신이시고 구성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송 쪽으로 보면 방통위처럼 어느 순간에는 독립적인 합의체 기구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

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패권국 전쟁에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고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 뒤처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AI위원회에 대해서 법안에서 다 기술을 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목적 중의 하나로, 이러한 독립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 중의 하나로 기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국가AI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계속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환경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진술인 고환경** 말씀하신 방향으로 구성이 앞으로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행정기구를 새로 지금부터 만들어서 제정법에 넣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되어 있는 국가AI위원회의 목적 중의 하나로 기술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올라온 법안이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나온 의견 다 종합해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준비가 끝나 있고, 그런데 올라온 법안들은 각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실증 규제특례 부분과 달리는 버스에서 문제가 있을 때 비상정지같이, 스톱 버튼 같은 비상장치를 마련하는 규제랄지 아니면 이훈기 의원님 안의 영향평가 부분 또한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EU나 미국, 어느 한 곳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가장 걸맞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서 정반합,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22대 국회 과방위만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최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샌드박스 기간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단기간 규제를 풀어서 진흥을 살리자라는 부분 그리고 국가의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진흥 그리고 데이터를 쌓는 입장에서 샌드박스 기간 제공을 명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샌드박스 기간 제공에 대해서 LG 연구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배경훈**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어떤 소스가 되는 데이터 확보하는 측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샌드박스를 통해서 뭔가, 특례 지정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산업 진흥이 되고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이상휘입니다.

사실 계속 이야기를 쭉 들어 봤는데 저는 언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사실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합당한지, 적절한지 이것도

참 망설여지는데 얘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이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AI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 공청회 자리가 궁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새로운 미래 AI 시대 빗장을 여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정적 면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학과 인간과의 전쟁 시대를 여는, 그런 빗장을 여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을 때 저는 좀 빨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라는 것이 그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고 문화도 너무 빨리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서 규제라든가 제도라는 것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정말 나중에 노동시장 다 잠식되고 온갖 시장이 기계한테 다 잠식당하는 그 시대가 조만간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히 반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업계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면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은 총론적으로 이해됩니다.

정보를 좀 다뤄 보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휴민트(humint) 방법이 있고 시진트(sigint) 방법이 있지요. 시진트 방법은 이메일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작업을 시진트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첨보적 관계, 휴면 대 휴면으로 하는 것을 휴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진트가 휴민트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민트가 그만큼 아직까지도 정보의 총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유승익 교수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상상을 발휘하니까요.

한동대, 포항이지요?

○진술인 유승익 예.

○이상희 위원 국내 굴지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인데, 차관님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상상하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인공지능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거의 총리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 각 산업 분야에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학기술부의 영역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문화·체육·생산·산업 어디 안 미치는 데가 없지요. 그래서 이 AI를 통하지 않고서 기본법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사이드카라든가 이런 것 발동을 못 합니다, 어떤 영역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글의 AI 백서를 통해서 보면 AI 규제의 획일성을 경계한다고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 사회안이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인공지능위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법률안들 보면 통제적 기능을 과학

기술부가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운영이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도 묻고 싶고 유승익 교수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사회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왜냐하면 통제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와……

왜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공지능은 수많은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혜계모니가 일어날 수가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시민사회의 안으로 유승익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정보통신부차관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술인 유승익 제가 먼저……

○이상희 위원 예.

○진술인 유승익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소속으로 하면 대통령 소속이고 규정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위원장 그리고 간사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그리고 위원이 4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로는 나오고 있는데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AI 거버넌스 그 자체는 독립적이고 통합성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가지게 될 크로스커팅, 범용적인 성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전체 그리고 경제적인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될 텐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지금 독립성을 갖추고 있느냐?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그 위원회가 정부조직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법안의 설계상으로는 다 자문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문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 지원단을 둘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도 있던데요. 어찌 됐든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치 지금 개보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진정도 받고 권리구제도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희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차관님……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업무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독립 행정기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하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산하로 존재했던 별도의 독립기구 형식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거나 조직의 위원회를 만들 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전체가 기준에 있는 법, 현재의 법 논의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인공지능에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마 열려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이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그러면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 거냐의 문제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방식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망중심으로 돼 있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가 되는 이용자 보호 문제도 있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독립위원회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큼 굉장히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늘었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님께 갔다가 박정훈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정훈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오늘 네 분 발제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입니다.

오늘 네 분께서 진술해 주신 것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빨리하자라는 건데 그것을 어디에 방점을 둬서 보완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중에 시민사회안이라고 하시는 그쪽 부분이 안전이나 이쪽 규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속히,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스펙시픽(specific)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단은 서비스 결과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하면서 빨리 진통하자라는 이야기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다행이다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환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빨리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AI 안전연구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술인 고환경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된 위험들이 실질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위험들을 가지고 규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위험, 그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연구 기능이 지금 국가 내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영국이 주도해서 지금 안전연구소를 설립해서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자는 국제적인 어젠다가 세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빠르게 안전연구소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안전연구소의 역할이나 연구하게 되는 방향은 주로 어느 쪽이 됩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문학적인 어떤 사회 위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 주로 연구하자는 겁니까, 거기서?

○**진술인 고환경** 그 부분은 아무래도 차관님께서 얘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연구소라는 게 미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캐나다는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출장을 가서 확인해도 그런 상태입니다. 하시는 일들은 각각 서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기술적인 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제품의 인증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부분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각 나라들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나, AI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로 펼지도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의 안전에 대해서 기술적인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안전 신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체계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철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연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초기 단계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문제를 만들에 있어서 실험군과 비실험군을 나누어서 LLM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술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였고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의, 미국 소속기관의 연구소로 출범을 했는데 새로운 제품과 내용에서 행정명령에 있어서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과 안전, 신뢰에 관련된 기준과 내용을 어떻게 정할 거냐를……

○**조인철 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안전기술연구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일부에서 염려하는 안전 부분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만들어져서 뭘 연구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아시다시피 연구소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몇백억이 들어갈지 몇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 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검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안전연구소의 처음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하여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국제적 규범……

○**조인철 위원** 배 원장님, AI연구원에서 지금 뭘 연구하십니까?

○**진술인 배경훈** 일단 저희 산업에 필요한 AI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인철 위원** 어디, 기술연구에 중점이 돼 있나요?

○**진술인 배경훈** 예, 기술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기술연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안전 관련한 기술을 별도로

연구하는 어떤 파트가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있어 보입니까?

○**진술인 배경훈** 저희도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AI 연구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올바르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별도 조직을 갖추고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프로세스,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을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별도로 출연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그 검증 기능을 계속하는 연구소를 또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공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형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출연연구기관…… 기술적인 파트가 굉장히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소보다는 부설연구소 조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실제로 지금 AI 전문가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실제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AI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민 위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강도현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기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뚜렷하게 어떤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기구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민수 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AI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육성과 규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유럽처럼 AI의 육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환경 변호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유럽의 경우에 애플이 이미 포기를 했고 메타도 사실상 AI 유럽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지요.

지금 유럽에서 갖고 있는 AI 관련 법 중에 가장 독소조항으로 이 업체들을 옥죄고 있었다는 규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과징금 부분입니까?

○**진술인 고환경** 일단 포괄적으로 위험에 기반해서 아주 다양한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제재 규정에 규정돼 있는데 전 세계 매출의 3%, 또한 그 관련 규정이 명확하면 준수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박정훈 위원**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술인 고환경** 너무 포괄적이고 복잡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유승익 부소장님께서 지금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5%를 부과해야 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법안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 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유승익** 일단은 제안드리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가 모델로 생각하는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재는 법안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부과해야 될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런 제재로도 육성과 규제라는 두 가지 효율적인 균형을 이룬 그런 발전이, 우리나라 AI 법안 관련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유승익** 예, 다른 산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선진국 됐습니다.

○**박정훈 위원** 최경진 교수님도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규제가 육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쭉 발의된 법안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포괄적인 규제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금 이렇게 과징금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으로도 규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최경진** 사실 모든 논의의 전제 중의 하나가 말씀들을 하시는 게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데요. 사실 개별 시스템이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적용됨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대부분 다 포괄적으로 그냥 고위험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충 어느 영역은 고위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실체를 다루니까 다 고위험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AI에 적용되는 정도라든가 또는 맥락에 따라서 고위험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현재의 법안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느냐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법안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 법안에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건 없잖아요?

○**진술인 최경진** 그게 문제인 거지요. 도대체 고위험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가 또는 표시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해야 되는 사업자가 개발자인지…… EU AI Act를 제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실체로 오퍼레이터(Operator)라고 하는 적용 대상의 유형들이 많습니다. 디플로이어(Deploy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포터(Importer), 수입자도 있고요. 또는 유통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플레이어들을 다 나눠 가지고 규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정훈 위원** 그것을 이제 앞으로 AI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유승익 부소장님의 의견, 아까 시민사회에서 낸 법안의 과징금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때, 예를 들어 AI 기술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을 때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고, 매출 기준으로 매진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했을 때 기업들의 창업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다만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제책이 있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 최경진**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혁신을 지원하는 것과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것이냐라는 것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도 유형에 따라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영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법을 제정한 다음에 행위 유형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데 사실 과정금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처벌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범위 기준이 사전에 없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규제기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술인 최경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최경진**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좀 더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은 사실 행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논의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딥폐이크 음란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법정손해배상 하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정 안 하면 그만이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데이터 삭제가 필요한데 데이터 삭제에 드는 비용까지도 다 보상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박정훈 위원** 포괄적인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사안에 맞게끔 피해를 보상하거나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최경진** 맞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앞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분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무제한토론 때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

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못지않게 정확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 네 분 얘기 다 들으니까, AI 기본법 저도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급하다는 것 다 인정하고 또 이게 진통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하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고환경 변호사님부터거든요. 제가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이 못 될 수도 있는데, 여기 40페이지 보면 ‘유연한 규제프레임에 기초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와 기술발전에 따른 위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 목표. 여기서 말하는 유연한 규제프레임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술인 고환경** 규제는 강한 규제와 연성 규제, 강성 규제와 연성 규제로 크게 나뉘는데 강성 규제는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고 그 해당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 제재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강성 규제로 보고 그렇지 않은 규제가 연성 규제……

○**한민수 위원** 그런 건 아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성 규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고환경** 예, 그 부분을……

○**한민수 위원** 유연한 규제 프레임이라는 것을,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도입률이 우리가 약 28%다 이런 걸 해 봤는데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진술인 고환경** 발표 자료 저도 인용을 한 것인데 OECD 국가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정부 보도자료에 지금 1위로 그리고 28%……

○**한민수 위원** 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의 뭘 가지고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배경훈 원장님께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이……

53페이지 제가 보니까 우리 AI 기술 경쟁력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특색에 맞는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 얘기하신 겁니까, 이건?

○**진술인 배경훈** 미국이 지금 압도적인 AI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민수 위원** 다음이 중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진술인 배경훈** 예,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AI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글·메타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그 기반으로 많은 AI 인재를 모아서 AI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K-컬처,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AI를

잘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타 같은 어떤 AI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하는 영역에서 AI와 잘 융합시켜서 저희 차별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미국은 그렇게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3위부터는 좀 차이가 난다고 아까 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이 AI 기본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겁니까,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술인 배경훈 유럽은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한민수 위원 미국은 규제를 안 하기 위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진술인 배경훈 어느 정도의,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각각 주마다의 어떤 AI 법을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만들지 않는다는 게 AI 기본법이라는 것을 어떤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AI를 만들어 가는 데에서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 최근에도 AI 학습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민수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일단 유럽은 규제 쪽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만든 거고 미국은 만들지 않아도, 그러면 시급성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술인 배경훈 산업 진흥 측면에서 그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다음은 유승익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66페이지에 보면 금지 인공지능의 카테고리 설정은 인공지능 기본법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것 설명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유승익 그러니까 개발이나 아니면 활용이 금지되어야 할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한민수 위원 그게 고위험 AI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진술인 유승익 금지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금지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고 EU AI Act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진술인 유승익 EU AI Act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그 AI 활용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AI 시스템으로 우리가 대상을 본다면 그 시스템이 어떤 작동을 하거나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되게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술인 유승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성 또는 기본권, 인권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할 목적의 인공지능, 그런 건 당연히 금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까지, 그나마 몇 초 안 남아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스템과 모델,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델과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걸 두고 있는 건가요?

○**진술인 최경진** 모델이라고 하시면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고요.

○**한민수 위원** 상품화된 것을……

○**진술인 최경진** 아니, 상품화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것 모델을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적용한 것을 실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한민수 위원** 제가 나름 네 분께 다 여쭈어보려고 시간 안배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추가질의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럼요. 추가질의 드립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배경훈 원장님, 저도 AI를 진흥과 규제 그리고 성장과 안전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이 지금 발전하는 단계고 사회에 확산되는 그런 단계라서 어차피 무게추는 진흥 쪽으로, 성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규제나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라는 것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21대 국회 때 AI 기본법이 충분히 논의되었는데 왜 입법을 미루고 22대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느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서 비판을 하시길래 제가 사과를 드리고 했는데, 일단 이 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산업계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진술인 배경훈** 방금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진술인 배경훈** 그러니까 어떻든 사실 각 부처마다 지금 AI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은 산자부, 과기부 그리고 문체부 각각의 정책들 그리고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기술개발을 해야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AI 기본법이 빨리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AI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보완·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앞서가니까 굳이 이런 육성·진흥 차원에서 AI 기본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배경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산업 진흥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10^{25} 플롭스(FLOPs)의 고위험 AI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위험 AI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것은 부작용에 대한 논의 말씀이지요?

○진술인 배경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생성형 AI가 처음 나오면서 그 환각 현상에 대한 이슈,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는 여러 가지 반대 장치적인, 해결하기 위한 장치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발전에 조금 지장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술인 배경훈 발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사실 여러 부처나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는 AI가 굉장히 공론화되어 있고 많은 수면 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AI 기본법 마련이 빨리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최경진 교수님,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배경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에 법 하나로 다 해결될 수는 없다, 꼭 필요한 조항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얼핏 들으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게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서 그것도 활용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좀 위험한 발상 아닌지요?

○진술인 최경진 제가 생각하는 공공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판결문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리걸 AI 쪽의 발전이 조금 덜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공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 중의 하나가 바로 판결문인데 그런 판결문 데이터가 데이터세트 형태로 민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장겸 위원 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진술인 최경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규제의 모델로 삼는 EU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GDPR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조차도 지금 이런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UK GDPR이 EU GDPR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 하에서도 기본적으로 판결문 데이터를 어떻게든 간에 민간에 제공하려고 하고 일단 데이터 학습용으로는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한 다음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혼출되

거나 재현되거나 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못 쓰게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은 사회의 그런 진보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그런 소위 판결문이나 한정돼서 쓰자는 말씀이지요?

○ **진술인 최경진** 그렇지요. 모든 공공데이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다 법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기 쉬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형태로 AI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아까 실현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므로, 아까 유승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지적하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런 지금 양립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 **위원장 최민희** 질문하세요. 답은 하십시오.

○ **김장겸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환경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술인 고환경** 말씀대로 지금 양립되는 견해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AI는 아까 말씀 계속 나왔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그 부분에서의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더 시급하다, 특히 소비자라든지 국민의 어떤 건강·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그 기술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위험이 발현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지금 대응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분을 모두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관련한 규제 프레임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장겸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AI에 대해서 진흥과 규제, 저는 규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요. 규제가 마치 못 하게 하고 무언가 진흥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진흥과 안전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부감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고환경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진흥과 안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술인 고환경**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그 자체로 위험한 기술이어서 규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핵심이 담겨져 있는 용어는 좀 피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 **이훈기 위원** 그리고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더 편할 것 같아요. 규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장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비슷한 영역인데 저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진홍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프레임이에요. 지금 기본법이 없어서 AI 진홍이 안 되고 모든 게 발목이 잡혀 있다 큰 흐름이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경훈 원장님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아까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제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AI의 진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기본법 제정에 이상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배경훈**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법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생긴다는 것 플러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6위 AI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3위하고 10위 사이 간격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1·2위와 근소한 3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국 그리고 중국 정도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 논의를 같이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을 육성해 나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AI 기본법이 최소한으로 마련이 돼야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네 분이 진술하셨는데 유승익 위원님이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글로벌 입법이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고 법제 간 통용성을 보이는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비호환적 법제를 토대로 자국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다름이 아니다’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선입법, 후보완한다는 것은 개문발차식 입법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규율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진술인 유승익**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단점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금 자국 산업 위주로, 그래서 소버린(Sovereign) AI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공지능에 주권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경쟁해야 될 것은 세계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세계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규율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저나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기술산업을 세계가 안전하다고 평가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만 더 말씀드리면 유럽 대 미국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은 자율 규제, 유럽은 강한 규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이 보여 주고 있는 규제

로의 발걸음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방 차원에서도 행정명령에서 예를 들면 듀얼 유즈(Dual-Use), 그러니까 이중용도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레드팀이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건 굉장히 강한 규제이고요. 주별로 봐도 최근 통과된 캘리포니아법 이것 굉장히 강한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율 규제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법제를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훈기 위원 최경진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얘기,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영향평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최경진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영향평가는 뭐에 대한 영향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권리, 기타 또는 사회 전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법익인지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향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영향평가와 경제적 영향평가, 기술적 영향평가 또 안전성에 관한 평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확정된 버전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기부나 아니면 안전연구소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우리가 엄청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안전연구소는 대부분 다 프론티어 AI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첨단의 정말 위험성 높은 AI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AI에 대해서 다 그것이 쓰이는 영역별로 약간씩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규제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충권 위원 저 말고 하실 분들이 더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많습니다.

○박충권 위원 많이 있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간사님 두 분은 제일 마지막에.....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박충권 위원 있기는 한데.....

○위원장 최민희 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제가 중간에 좀 나가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경훈 AI 연구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국내 AI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산업계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술인 배경훈** 앞서 좀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AI 기본법이 자연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들 그리고 어떤 기본법들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돼지고 지금 기본법 안에서도 규제나 금지 조항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산업 분야면 아예 시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저희 기업 입장에서 지금 AI를 통한 산업 진흥 그리고 또는 산업 활성화 이런 측면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의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금지 조항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들을 빨리 헤징(hedging)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AI 기본법 마련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앞으로 개발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게 실컷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금지라든가 규제에 걸려서 그게 무용지물될 수도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우리가 처음 TNT가 개발됐을 때 이게 인류의 삶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또 무기로도 활용이 되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신기술이 그런 부작용도 일으켰지요. 그래서 개발한 그분께서 노벨상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지대한, 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빨빠르게 AI를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또 AI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규제를,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그래도 유연하게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익 연구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 유승익**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안전성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공지능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잠재적이기도 하고 지금 현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규율이 필요하지 그것이 안정적일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기는 한데요. 기본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AI 기술개발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칼을 가지고 이것을 요리에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그 칼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응용 기술 그리고 사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이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유해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칼을 만드는 매뉴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우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AI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완성 형태로 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초기 단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해서 완성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 골격부터 갖추어 놓고 빠르게 토대를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입법 활동들을 해 나가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강도현 차관님한테 여쭤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병합 과정, 병합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입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규제다, 혁신이다, 이 법이 어디에 치중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은 진흥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전문가가 말씀하셨지만 양적으로 일정한 진흥과 규제를 같이 가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법은 병합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하면서도 실제 안전이나 위험이나 이렇게 봤던 부분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거하면 윤리에 대한 문제, 기준에 윤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신뢰와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에서 위험을 어떻게 볼 거냐에서 고위험으로 보느냐, 고성능으로 보느냐 그 두 가지 분야에서 위험의 범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게 EU 법이고 성능에 있어서는 아까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26} 플롭스(FLOPs)를 기준으로 한 게 EU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10^{25} 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법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현행 법에도 고성능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러면 고위험에 대한 문제에서 금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EU는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아까 전문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예외 조항을 많이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별칙의 시행도 늦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체계, 영향평가, 관리체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의원님들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거의 성실히 병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동시에 우려도 많습니다. 그 우려의

핵심은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네 분께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면서도 위험성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른 분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AI 관련 포럼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1950~1960년대에 안전벨트가 개발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게 되면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들의 사고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요.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면서 계속 위험성만 부각시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환경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강한 규제 프레임과 또 유연한 규제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면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거로 인공지능의 위험이 과장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멸종 가능성, 핵무기에 빗대는 것도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과장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게 과장됐다고 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현실적으로 또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술인 고환경 일단 말씀하신대로 제가 규제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진술을 보시면 규제가 필요하다면 적정 규제,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유연한 규제 프레임을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먼저 국제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대응, 적절한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된 위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AI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성능 AI가 개발이 되지 않았고 그 개발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완전히 오픈 이슈인데 핵과 같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냥 같이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돌이켜 보면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인간을 이겼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사회적인 포비아를 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홍보, 요새 벼를 눈의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고 다만 실증적인, 실제적인 위험은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랙티컬(practical)하게 대응해야 되고 EU처럼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가지고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AI에 대한 금지 규정까지 미리 마련하는 것은 사전 규제거나 기술개발 자체를 막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또 인공지능 기본법이 그런 지원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동감합니다만 실증적인 위험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치를 할 경우에 정말 실증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승익 교수님께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승익 교수님께서는 중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실증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었고요. 초래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술에 대해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법률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실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진술인 유승익** 올해 초에 3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AI 위험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의뢰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글래드스톤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무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무기화됐을 때 교정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구체적 위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얘기는 딥페이크 문제인데요. 그전까지는 예상 못 하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법안들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다 사후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설계부터, 기본적인 개발부터 그리고 디자인부터, 기본값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특히나 안전·위험성·인권 이런 것 경고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되니까 그때 가서 보완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실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예상되지 않지만 분명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도현 차관님, 이런 위험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연구소가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상되지 않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법 체계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금지행위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처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법 체계입니다. 또 고위험을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EU 법에서 가지고 있는 금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뇌를 조종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행위 아니면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서 특정하게 처벌이나 내용이 차별화가 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나머지에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완 체계나 내용보다는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병합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은 위험에 대해서는 고위험 분야와 내용을 정리한다. 그다음에 고성능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에 대한 누적 학습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와 내용에서는 관리의무 체계나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책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배경훈 원장님, 지금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법마다 다르고 다른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보면 국내에 지금 입법 발의되어 있는 안과는 사뭇 다른데 규정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요, 머지 않은 미래에 ‘이게 AI가 맞아? 아니야?’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AI 많이 경험을 안 했는데도 어렵잖으나마 ‘이건 AI야’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더더욱 더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소위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영역이 생길까요?

○**진술인 배경훈** AI가 만든 서비스인지 사람이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점점 AI가 판단하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든 분명하게 판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발전을 위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AI의 부정적인 사용과 어떻게 보면 그런 AI가 사람인 척하면서 뭔가 인증하는 체계들을 또 AI가 막는 이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하여튼 AI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필요한 거네요.

○**진술인 배경훈** AI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AI에 대한 규정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어떤 고위험, 그 위험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분류하고 체계를 잡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몇 년 지나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면?

○**진술인 배경훈**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내놓는 제품과 서비스 위주의 자정작용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안전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검인증 체계도 만들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AI 위험 관련된 AI 연구도 계속 지속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위험요소인지 또 기술에 대한 발전 체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전연구소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법 체계가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규율하고 그런 어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갖추려면 규제기구, 안전연구소 같은 것들은 따로 규정이 되어서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체계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법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규율하고 규제기구 내지는 안전연구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

○**진술인 배경훈**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저는 전진하게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유승익 교수님!

○**진술인 유승익** 예.

○**노종면 위원** AI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서 관련 주체들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제공자 개념이 있고 운영자 개념이 있고 또 이용자 개념이 있고 이용자와 별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고. 이것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채용 AI, 채용 프로그램을 만든 AI 업체가 있고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이 샀고요. 그것을 산 기업은 운영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는 운영자이기도 하고 이용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채용에 응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유승익** 대략 맞는데요, 기업 관련해서는 운영자가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공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안에는 개발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진술인 유승익**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개발자와 제공자를 분리해서 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진술인 유승익**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를 하려면 개발자가 따로 규제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분리해서 규정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EU AI Act 같은 경우는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제공자, AI 상품을 파는 제공자가 저작권을 사서 하청을 주든가 아니면 저작권을 사는 방식으로 개발자를 따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규율 체계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규제와 진흥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서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분적으로 보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기본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규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배경훈 원장님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배 원장님 주신 이 의견 진술 마지막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업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도약과 발판이 되는 기본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진술인 배경훈**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은 법이 없잖아요?

○**진술인 배경훈** 예.

○**노종면 위원** 그렇다고 법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하고 싶은데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진술인 배경훈** 저희가 지금 나름의 필요한 AI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아직은 한국이 고위험의 AI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들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정 역할은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의 어떤 정부기관 통해서 뭔가 가이드를 받고 해야 되는 시점들이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법 그리고 AI 안전연구소를 통한 어떤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최경진 교수님께 짧게 좀 여쭈어볼게요.

영향평가제 이게 사전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거지요?

○진술인 최경진 예.

○노종면 위원 이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아니고
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최경진 그런 굉장히 심각한 해악 내지는 폐해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보
편적인…… 모든 듀얼 목적 AI라든가 일반적인 AI에 대해서 그런 특정한 예외적인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도
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의무, 예를 들면 표시 의무라든가
워터마킹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추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
도의 의무는 지금도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다각
적인 요소를 모든 AI 사업자 내지는 개발자 또는 배포자 또는 기타 굉장히 다양한 사업
자들한테 다 요구할 거냐라는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예.

우선 잠시 어디 다녀오느라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익 교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AI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제에 있어 가지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규제에 있어 가지고 방법론을 보면 항상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항상 규제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구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
다.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물이나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워터마킹이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워터마킹이라는 것은 콘텐츠의 활용성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AI 생성물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시각적
워터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유승익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충분히 예외적인 예외
조항을 둬서, 예를 들면 예술적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기술에다가 워터마킹하
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산업 자체가 다 망할 테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
서 그런 예외는 충분히 둘 수 있고 그것은 법에서 항상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위원 예.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배경훈 원장님, 여쭈어보고 싶은 게 AI 기본법에서 결국에는 AI의 어쨌든 생성물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권·규제권을 만약에 어떤 주체가 가지게 된다면 그 기준이, 잣대가 너무 오락가락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그냥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AI 산출물을 실제 팔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느 시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가 기술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 무오류성을 가졌을 때 그것이 활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은 기업에서 보통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실인 배경훈 판단 기준들은 각 기업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기업에서 내놓고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생산되는 AI의 데이터들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 얘기를 하셨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실 문제의 책임성이 누구냐? 초기의 AI 모델을 개발한 업체냐 아니면 그 모델을 가져가 적용한 어떤 자동차 컴퍼니의 문제냐 이런 책임론들이 아마 다 달라질 거라 보여지고요.

실제 완전 무결성의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사실 기업에서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의 수준을 100%로 얘기할지 90%로 얘기할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또는 사회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의 어떤 합의 그리고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이것을 여쭈어보는 게, 물론 LG가 아마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때 그 사람들이 무오류성을 가진 운전자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고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사실 그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이 될 거라 봅니다. 우리 AI 산출물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더라도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 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무오류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도전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해 가지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안전망을 마련했다면 그것을 승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굳이 또 제가 말씀드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기본법이 오히려 기업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단 설계돼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인 배경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준석 위원 예,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희 국회가, 사실 우리 상임위가 AI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AI 기본법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그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여야가 오늘 공청회를 마련하고 조속하게 AI 기본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똑같은데 오늘 공청회를 막상 해 보니 배경훈 원장님은 굉장히 혁신 위주로 나가자 하는 쪽이고 유승익 교수님은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서도 그 용어 규정이 모호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 힘들다라는 점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여러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법조차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빨리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오늘 논의 결과도 주목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오늘 배경훈 원장님 발제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보다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뮌헨안보회의에서 2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기술의 선거 악용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국제적인 노력이 있겠지요. 우선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최근의 딥페이크를 보고서, 더구나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 사람이어서 더욱 놀라서 오늘 딥페이크 법률안들을, 개정안 법률안들을 12건을 상정했습니다. 곧 소위를 거쳐서 신속하게 이게 진행해 나갈 텐데. 국내적으로 이런 규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들을 법안에 담아서 규제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뮌헨협약의 사례가 되겠네요, 뮌헨안보회의의.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혁신 지향의 자율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 백악관의 AI 인프라 리더십 라운드테이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 이런 건설에 육군 공병대까지 동원하는, 투입하는 방안을, 옛날에 중국서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셈인데. 핵심은 주요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얼마 전에 구글의 전 CEO 누구였지요, 알파벳 회장 하던? 슈미트인가요?

○이해민 위원 슈미트.

○최형두 위원 아, 슈미트가 무슨 방송 사고처럼 해서 앞으로 살아남을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해민 위원 아십니까?

○이해민 위원 (고개를 저음)

○최형두 위원 나만 봤나. 왜 다들……

거기 보니까 AI만…… 그래서 AI로 G3로 가자는 이런 원대한 목표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빨리 AI 기본법 제정이 촉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보면, 특히 오늘 공청회 토론자의 걱정하시는 내용을 보면 용어 하나하나가 매우 엄밀해질 때까지 하다 보면 법안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이게 헌법도 아니고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가해 나가고 개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수많은 법들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테고.

오늘 발의된 12건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보고서 우리가 법에 미비되었던 부분 또 법에서 염별해서 차단하려는 부분을 강화했던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배경훈 원장님은 어쨌든 빨리 혁신적인 법안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유승익 교수님은 굉장히 세세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유 교수님, 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구체화되고 할 때 계속 법안은 고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정법률안 자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논의를 숙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 속도를 늦추는 이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법률안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유승익** 이 법안 21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21대 논의됐었을 때도.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은 논리, 기업과 진흥의 논리로 사실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법안소위, 사실 소위원장 대안 같은 것 공개도 안 하시고 시민사회 몰래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챗GPT 나온 이후로 이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여론, 국내적인 여론 때문에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22대 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논의를 늦추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흥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늦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은 얼핏 느낌에 이게 마치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아까 또 이야기 하셨는데 자동차산업이 한편으로는 엔진이 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브레이크가 발전하고 해서 병립해서 안전과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과도한 시민사회의 우려·걱정 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적인 규제들이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AI 선도 국가로 나가야 될 나라에서 AI 기본법은 내가 볼 때는 올해 내에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교수님께서도 그것을 좀 최소한, 나중에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 자체로 해서 기본법 자체의 제정이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당 위원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논의를 우리 교수님이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진술인 유승익** 예.

○**최형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이건 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만 이전의 유럽에서, 영국에서 자동차가 막 만들어졌을 때 너무 걱정들이 많아서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 비유하기에는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걱정이 많다 보면 진짜 진통돼야 될 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AI G3 국가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에서 속도가 너무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방통위 나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위험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경우 별칙·과태료 등 제재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지되는 인공지능 규정, 이용자 설명요구권, 분쟁조정제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지요, 방통위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김현 위원 그러면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런데 일단은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AI 산업의 혁신이라든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러니까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 입법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이견이 없다기보다는 기본법을 통해서 산업 진흥이라든가 혁신 촉진을 위한 부분에 대한 토대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용자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지금 딥페이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논의도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난번 결산소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질문을 했었고 큰 이견은 없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의 입장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은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의 투입……

○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기본법을 지금 국회가 만드는데 방통위가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김현 위원 그러면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한, AI 기본법에 대해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어느 것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나와 줘야 되지요. 지금 아무리 위원장 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유 권한, 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현 위원 입장을 내시란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엄밀하고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을 위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재원의 투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규제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AI 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용자 책무라든가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법에서 빼고, 그러니까 진흥 부분 위주의 법안을 가져가고 나중에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를 거쳐서 별도의 법안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방통위에서 준비는 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가 혹시 발의할 수……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의를 해 주실……

○김현 위원 그러면 법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발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바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간사로서 중인 채택 때문에 처음에 없어서 네 분의 발제를 사실은 사전에 보고 진흥 중심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에 무게를 두는 분이 있고 또 진흥에 무게를 두고 기업의 자율규제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네 분의 의견이 드러난 토론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제가 다시 여쭤보진 않지만, 2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특정하게 질문을 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쨌든 추후에, 물론 위원장님이나 최형두 간사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AI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법률안에 대한 제각각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토론회라든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2소위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7분 주세요.

혹시 다 자료집을 받으셨습니까, 진술자들?
자료집 84페이지, 8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번 보면 규율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 있고요. 거기 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모델’로 분류를 해 놓았고 동그라미 두 번째에 ‘인공지능과 기술 중립적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방통위가 얘기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고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을 따라서 만드는 이 방식에 대하여 고환경 변호사님, 그런 방식이 저희가 채택 가능한 방식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가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데 이용자 보호법을 먼저 발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술인 고환경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큰 틀의 규제 프레임은 갖추고 지금 형태로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이용자 보호라든지 소비자 보호, 각종 안전, 이런 이슈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술인 고환경 예.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오늘 규제할 것이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 모델인가, 인공지능 제품인가, 인공지능 시스템인가? 이게 쓰는 단어가 다 다르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사회안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분이 다 인공지능의 기술 중립성은 인정하시나요? 특히 유승익 교수님, 인공지능의 기술 중립성을 인정하시나요?

○진술인 유승익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는 조금 힘든데 인공지능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진술인 유승익 예.

○위원장 최민희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AI 안면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에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지요. 순기능으로 활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공산국가·독재국가에서 이 시스템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 침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AI 안면인식 기술은 개발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까 발제문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인권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개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유승익 예.

○위원장 최민희 그냥 확인만 한 겁니다, 제 입장과 상관없이.

AI 관련 법이 21대에 이렇게 논의됐고 통과가 안 됐고는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 AI 기본법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오늘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됐는데, 이게 만들어져야 되냐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냐에도 온도차가 있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AI 기본법을 만든다는 전제로 모인 자리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안 나온 딱 한 가지, 나머지 다 나오셨어요. 이게 국제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ICT에 집중 투자를 해서 ICT 강국이 됐듯이 조금 늦었지만 AI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한번 대한민국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그것에 일부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국가가 일부 주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원한다는 거지요. 그게 재정 지원도 되고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하게 만드는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 없어도 기술은 개발하는데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지적할 때 책임 문제가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필코 벌어져요. 그랬을 때 기본법이 없고 그 기본법에 최소한의 규제로 해 두지 않으면 기업은 이상한 책임을 더 져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낼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서 법안 제안하실 거지요? 청원하셨나요?

○진술인 유승익 예, 거의 완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것 빨리 청원을 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정리해서 발의해 주시면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 참여 토론회 했거든요. 그 토론회를 보면 쟁점이 보다 명확해졌고, 오늘도 사실은 머리는 좀 복잡해졌지만 쟁점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에 제1조 규정할 때 ‘인공지능이란 점점점’ 해야 될지 ‘인공지능 시스템 점점점’ 해야 될지부터 소위에서 충실하게 의논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컨센서스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ICT에 집중 투자했듯이 AI에 한 번 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자는 컨센서스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시민사회의 법안이 빨리 발의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원이든지 의원 입법이든지 발의되면 저희가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님 추가질의……

○한민수 위원 괜찮습니다. 많이 나눴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조인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지금 정점식 의원 법안이 여당의 당론화된 법안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최형두 위원 예, 중심적인 법안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민주당도 그런 당론화된 법안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 거지요?

○김현 위원 전문위원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이견을 가지고 저희가 조율한 뒤에……

○위원장 최민희 조율한 뒤에 당론화할 생각이 있는……

○김현 위원 당론화하든 아니면 그냥 가든……

○위원장 최민희 일단 당론이 있으니까 민주당도 가능하면 당론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사회안 가지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조국혁신당도 당론인가요?

○**이해민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일단 공청회를 마치고 보내 드리고 할까요?

○**한민수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공지능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들, 과기부 관계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하시고 국감계획서 아까 일반증인 채택 못 한 것을 위원님들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40분)

○**위원장 최민희** 좀 전에 보류하였던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 채택하는 과정에서 양당 위원님들이 채택하신 증인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간사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뿐만 아니라 김현 간사님도 대단히, 지금 벌써 눈빛으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위원 퇴장)

○**최형두 위원** 잠깐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도 지금 화가 많이 나서 나갔는데 김백 사장 견하고 이것은, 예컨대 지금 우리는 MBC 사장도 요청을 했습니다. MBC는 방문해서 이것을 하지만 그러나 MBC 방문해서는 비공개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감사랑 전혀 무관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사장을 공평하게 그러면 증인에서 다 빼자 그렇게 해서 김백 사장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KT 사장 견의 경우는 여러, 지금 과기정통위 같은 경우에 CEO들을 가급적 배제하자 그리고 실제로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서 따지자라는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뺏는데…… 이게 다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은 KT 대표를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최형두 위원**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김현 간사님은 김백 사장 넣자는 거지요? 그 하나씩 지금 주

장하시는 거지요?

○김현 위원 그 대안이 뭐예요, KT?

○위원장 최민희 KT 부사장을 부르……

○최형두 위원 KT 부사장급을 부르자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최민희 예, 제가 이 두 개는 다 받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김백을 받겠다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KT 대표 빼고 김백 사장은 받아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왜냐하면 방송사 간의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방송사 사장은 부르고 어느 방송사 사장은 빼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 불러야 돼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다르지. 민영화가 안 됐잖아요, MBC는.

○박민규 위원 주식 취득으로 민영화가 됐잖아요.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면 JTBC 사장도 불러야지.

○위원장 최민희 JTBC 사장은 왜요? JTBC는 원래 종편이잖아요.

○김장겸 위원 종편이라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번에……

○김현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요.

○위원장 최민희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전에 보류하였던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104명, 참고인 47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인인 유경선은 증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각각의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출석 일시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지요.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대로 다 증인 부를 것을 양보를 하고 이런 것을 전제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걸 바꾸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시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전화 안 받으셨잖아.

○최형두 위원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내가?

○위원장 최민희 보세요. 전화……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서로가 간사 협의를 거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한 것 아닙니까? 가급적 우리가 기업인들을 불러서 여기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피하자, 그리고 언론사 사장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다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맞춘이 균형을 이렇게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또 표결을 한다면 그거 뭐하려고 그렇게 길게 중인 협의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그 중요한 중인을 왜 빼냐 그러는데 그건 다 야당 간사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더욱이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갑작스레 빼기로 했던 참고인을 증인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냥 다수결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은 전부 무효지요, 합의는.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지금 증인 채택을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큰 비판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막중한, 지금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해 놓고 우리 것은 다 빼고 민주당 것만 일부 변경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이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예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영문인지 잘 알지만 이 대목은 당초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합의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저는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께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김현 위원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위원장 최민희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았다고 하십니다.

○최형두 위원 이 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최민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YTN 청문회와 YTN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의 일정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의 경우는 우원식 의장께서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에 준하는 YTN 사영화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그래서 YTN의 김백 사장과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양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최형두 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다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한 증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으로 제가 간사님께 이것 협상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으로……

○최형두 위원 언제 통화했다는 겁니까?

○김현 위원 아니,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니, 진짜예요.

○최형두 위원 아니, 상임위원장에,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협의를 위

해서 상임위원장에 있었는데……

○**김현 위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최형두 위원** 5시 7분이면 우리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잖아, 여기서.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최형두 위원** 여기 나는 앉아 있고 밖에서 전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김현 위원**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최형두 위원**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요, 제가.

○**김현 위원** 여기 계셨다고요?

○**최형두 위원** 계속 있었지요.

○**김현 위원** 여기 안 계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떠난 적이 없습니다, 4시부터.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표결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걸 갖다가……

○**박충권 위원** 그러면 다 나옵시다, 다.

○**위원장 최민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몇 명이지요?

○**최형두 위원** 아이,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지요.

○**위원장 최민희** 13인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최형두 위원** 아이, 참, 정말……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 버렸네.

○**김현 위원** 전부 원점은 아니지요. 많이 양보, 우리도 많이 없앴지요.

○**최형두 위원**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를요? 지금 YTN의 회장님 했지……

○**김현 위원** 이동관, 김홍일 다 뺐잖아요.

○**최형두 위원** 우리는 전직 대통령도 빼 줬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고 조정을 잘했고, 지금 YTN만 있지요.

○**최형두 위원** KT도 그대로 두고……

○**김현 위원** KT 대표는 원래 증인이었어요. 그거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신 거지.

○**위원장 최민희** 토론을 중단해 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위원장인 제가…… 정말 그 명단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일정 계획서를 채택하고 싶었으나 막판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상 오늘 표결로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08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이 건	전)여성신문 부사장	2024. 10. 7.(월) 10:00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선임 관련
이인철	변호사		KBS 이사 선임 관련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		방통위 운영 관련
이상준	경기남부청 경감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이종민	국세청(5급)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강문우	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고종현	경찰청 경감(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김기철	경찰청 경정(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김문준	감사원 감사관(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김우진	서울청 혜화경찰서 경감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박동찬	국세청(6급)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박민규	국세청(6급)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양우석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오경택	국세청(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이진은	감사원 부감사관 (현재 파견)		사정기관 관련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임성철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전기용	경찰청 경정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주월오	울산지검 검찰주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최성열	감사원 부감사관 (현재 파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한동훈	서울청 경감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윤원일	대검찰청 형사3과 과장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1. 망 무임승차 관련 2. 한국시장수익금 및 K-콘텐츠 시장 재투자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1. 인앱결제 관련 2. 유튜브 운영정책 및 검색엔진 운영 관련 3.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관련 4. 방발기금 및 국내사법시스템 협조 관련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관련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백승재	팬트리 대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찬용	SOOP 대표이사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		1. 뉴스제평위 관련 2. 치지직 음란물 영상
유오현	SM그룹 회장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구글의 유튜브 신속조치 약속 관련 질의
김도균	클라우드 플레이어 지사장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이사		우울증갤러리 자율규제내역 및 대응방안 질의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청부민원 관련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청부민원 관련
정철민	YTN 인사팀장		청부민원 관련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청부민원 관련
이다현	리어 예술단(주식회사 리어아트 컴퍼니)		청부민원 관련
김홍수	방심위 특위 위원		청부민원 관련
박우귀	방심위 특위 위원		청부민원 관련
허연희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024. 10. 7.(월) 1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강경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김정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황성욱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김정한	방심위 운영지원팀 직원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김종인	방심위 민원상담팀 직원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이선태	iMBC 대표		방통위 현안질의
이상우	KBS 미디어 대표		방통위 현안질의
김은미	제너럴 에이전트 대표		국내 대리인 제도
송현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 중기정책관(정책관)	2024. 10. 8.(화)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관련 질의
강정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 성희룡·갑질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경영지원실장		
유우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림원 성희롱·갑질 관련
이창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한림원 성희롱·갑질 관련
강홍식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포항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김영섭	KT대표		1. KT 최대주주변경 및 알뜰폰 사업 2. 통신비·단통법 관련 3. 불법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4. 기간통신사업자 KT의 불법·위법적 고객 통신감청 및 패킷 위변조와 검찰 출신 등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 관련 5. 고인 상대 요금 청구 및 약정 만료 전 미통보 관련(타통신사 별건), 통신사 멤버십 혜택 6. KT 최대주주변경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관련 7. LTE 3축 사업 관련 8. 통신이용자 품질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1.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관련 2.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3.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임봉호	SKT(커스터머 사업부장)		1. 알뜰폰 사업 2. 단통법 관련 3. 통신사 멤버십 혜택, 가계통신비, 단통법 통신정책 관련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1. 디지털세 및 국내 이용자차별 관련 2. 인앱결제 관련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KT 최대주주변경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KT 최대주주변경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KT 최대주주변경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국내외 OTT 요금 관련
김창욱	스노우 대표이사		딥페이크 관련
원홍재	HCN 대표이사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중저가 단말기
정수현	LGU+(컨슈머부문장)		1. 단통법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2. 공정위 조사 담합 협의 관련 3. 알뜰폰 사업 4. 통신사 멤버십 혜택, 가계통신비, 단통법 통신정책 관련 5. 통신이용자 품질 관련 R&D 예산 관련 질의
이우일	서울대학교(명예교수)		R&D 예산 관련 질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	2024. 10. 8.(화) 10:00 우주항공청	1.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 2. 항공우주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쟁 관련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2024. 10. 10.(목) 10:00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디지털 포용 정책 및 키오스크 관련
최남용	KCA 전)기금운용본부장	2024. 10. 10.(목) 10:00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옵티머스펀드 투자결정 관련
변종인	KINS 책임연구원	2024. 10. 10.(목) 10:00 KINS	제논탐지장비 관련
윤주용	KINS 책임연구원		제논탐지장비 관련
함돈식	KINS 책임연구원		제논탐지장비 관련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2024. 10. 10.(목)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하청업체 도산 및 자금지급 실태 파악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내진설계 변경에 대한 질의
윤태양	삼성전자 CSO(부사장)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신용목	서울시립대 교수	2024. 10. 14.(월) 오후 KBS·EBS·방문진	1. 공영방송 장악 관련 2.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관련
서기석	KBS 이사장		1. 공영방송 장악 관련 2. KBS 사장 임명 제청과정 관련
정재권	KBS 이사		1. 공영방송 장악 관련 2. KBS 사장 임명 제청과정 관련
이석래	전)KBS 이사		공영방송 장악 관련
김동윤	KBS 편성본부장		광복절 '나비부인' 편성 사태 관련
마채숙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1. TBS 방송사 존폐 관련 2. 서울시 TBS 담당부서 책임 및 조치내역 관련
김별희	전)TBS PD	2024. 10. 15.(화)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TBS 방송사 존폐 관련 2. 서울시 TBS 담당부서 책임 및 조치내역 관련
송원섭	전)TBS 라디오 본부장		1. TBS 방송사 존폐 관련 2. 서울시 TBS 담당부서 책임 및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조치내역 관련 1. TBS 방송사 존폐 관련 2. 서울시 TBS 담당부서 책임 및 조치내역 관련
이강택	전)TBS 대표		1. TBS 방송사 존폐 관련 2. 서울시 TBS 담당부서 책임 및 조치내역 관련
정태익	전)TBS 대표		TBS 방송사 존폐 관련
이성구	TBS 대표이사직무대행		TBS 방송사 존폐 관련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회장, 현)원로		YTN 민영화 관련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YTN 민영화 관련
김장현	한전KDN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YTN 민영화 관련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YTN 민영화 관련
정성학	전)한전KDN 감사		YTN 민영화 관련
이상인	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YTN 민영화 관련
김진구	유진 ENT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배석규	유진 ENT 사외이사		YTN 민영화 관련
유순태	유진홈센터 대표이사		YTN 민영화 관련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YTN 민영화 관련
김 백	YTN 사장		YTN 민영화 관련
이광우	울산과기원 상임감사	2024. 10. 18.(금) 10:00 울산과기원	감사실 업무 관련
김남신	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2024. 10. 17.(목) 10:00 생명연	부정연구 관련

참고인(54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레지널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사장	2024. 10. 7.(월)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망 무임승차 관련 2. 한국시장수익금 및 K-콘텐츠시장 재투자 관련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관련
이성우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팀장	2024. 10. 7.(월) 10:00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 색출수사, 보복편파 심의 등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봉지우	뉴스타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10. 8.(화)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심의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
오정환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문호철	전)MBC 보도국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허무호	전)MBC 기자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김성한	민주노총 대학노조 포항공대 지부장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1. 디지털세 및 국내 이용자차별 관련 2. 인앱결제 관련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KT 최대주주변경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국내외 OTT 요금 관련
강지남	HCN비정규직 노조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노태문	삼성전자(MX사업부장)	2024. 10. 10.(목)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저가단말기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R&D 예산 관련 질의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		R&D 예산 관련 질의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R&D 예산 관련 질의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R&D 예산 관련 질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		AI 현안 관련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AI 현안 관련
최재식	카이스트 설명가능 인공지능연구센터장		AI 현안 관련
김보라	비즈워치 기자		공공사이트 도메인 관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1. 신한울 3·4호기 건설 승인 2. 한빛원전 주민공청회 과행 관련 3. 원자력 안전관리 문제점 지적
정현결	경주환경운동연합 대표	2024. 10. 10.(목)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김용국	한빛 원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한빛원전 주민 공청회 파행 관련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이용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조애진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		공영방송 장악 관련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공영방송 장악 관련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	2024. 10. 14.(월) 오후 KBS·EBS·방문진	1. 공영방송 장악 관련 2. KBS 내부상황 증언 등 3. KBS 운영 관련
김승준	KBS 기술협회장		KBS 내부상황 증언 등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KBS 내부상황 증언 등
오정환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문호철	전)MBC 보도국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허무호	전)MBC 기자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		TBS 방송사 존폐 관련
이정환	TBS 노동조합 위원장		TBS 방송사 존폐 관련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YTN 민영화 관련
유석훈	유진그룹 경영혁신부문 사장		YTN 민영화 관련
홍성제	유진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2024. 10. 15.(화) 10:00 방송통신위원회	YTN 민영화 관련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 지부장		YTN 민영화 관련
김동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YTN 민영화 관련
박종섭	한전KDN 노조위원장		YTN 민영화 관련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YTN 민영화 관련
000	표준연 행정원	2024. 10. 17.(목) 10:00 표준연	표준연 관련
정순천	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2024. 10. 17.(목) 10:00 생명연	부정연구 관련
서성원	카이스트 선임연구원	2024. 10. 17.(목) 10:00 카이스트	카이스트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심은형	카이스트 위촉행정원		카이스트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임철호	전)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항우연 운영 관련
류지열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 10. 17.(목) 10:00 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학교, 디지털 인재양성, IT 용역, 대한수학교육학회 등 재단 운영 관련 질의

○출석 위원(20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정책기획관 송재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출석 진술인

디지털 포용에 관한 공청회

신민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문정(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에 관한 공청회

고환경(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배경훈(LG AI연구원장)

유승익(한동대학교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1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3)

이상 5건 9월 13일 회부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2024. 9.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이상 2건 9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 9. 1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9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